

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

(제3-26조제1항, 제3-27조제1항, 제3-28조제1항 관련)

1. 경영개선권고

- 가.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
- 나.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경영개선요구

- 가.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85% 미달하는 경우
- 나.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경영개선명령

- 가.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
- 나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